

1. 개정이유

「치매관리법」 개정(법률 제17795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에 따라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,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,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(안 제3조의4)
- 나. 치매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범위를 명시함(안 제3조의5)
- 다. 치매실태조사의 방법·내용 등을 마련함(안 제4조의2)
- 라.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(안 제6조)
- 마. 공립요양병원 운영·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(안 제7조의4)
- 바.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협진 치료를 위한 규정 명시(별표 2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1.2.16. ~ 3.29.) 결과,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
협의 완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, 제3조의5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

확보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·시행
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
3.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
5.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6.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의5(치매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

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

있다.

1.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그 밖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·자료의 산출 및 관리
2. 치매정보시스템 등록자에 대한 현황 관리
3.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처리 및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 지원
4.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범위,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의2(치매실태조사)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치매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별·성별·연령별·유형별·중증도별 추정 치매환자 및 치매유병률 현황
2. 경도인지장애 추정환자 현황
3. 치매상병자 현황
4.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, 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등 치매관리비용
5.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
6. 치매 관련 자원·서비스 현황
7. 치매 관련 의료기관, 장기요양기관, 돌봄서비스 기관 등의 운영 및

이용 현황

8. 치매환자 가족의 소득·재산 등 경제상태, 건강상태,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치매 현황 및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

② 치매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치매환자 및 가족,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

2. 치매환자의 진단·치료, 서비스 및 자원 이용 등 자료 조사

3.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면접조사

4.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·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1.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
2. 그 밖에 중앙치매센터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를 “법 제16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7조의4제1항제2호 중 “신경과전문의,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”를 “신경과 전문의, 신경외과 전문의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,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
별표 2 I 제3호가목3) 단서 중 “치매상담센터(이하 “치매상담센터””를 “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치매안심센터””로 하고, 같은 표 II 제1호 중 “치매상담센터”를 “치매안심센터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제3호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사 인력을 둘 것

(1) 신경과 전문의, 신경외과 전문의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

(2)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신경과 전문의,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 것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2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4(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1.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·시행</u> <u>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</u> <u>3.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</u> <u>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</u> <u>5.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</u> <u>6.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</u>

<신 설>

<신 설>

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의5(치매정보시스템 구축·

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과 그 밖의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·자료의 산출 및 관리

2. 치매정보시스템 등록자에 대한 현황 관리

3.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처리 및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 지원

4.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범위,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의2(치매실태조사) ① 법 제

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(이하 “치매실태조사”라 한다)
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별·성별·연령별·유형
별·중증도별 추정 치매환자
및 치매유병률 현황

2. 경도인지장애 추정환자 현황

3. 치매상병자 현황

4.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,
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
비용 등 치매관리비용

5.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

6. 치매 관련 자원·서비스 현
황

7. 치매 관련 의료기관, 장기요
양기관, 돌봄서비스 기관 등의
운영 및 이용 현황

8. 치매환자 가족의 소득·재산
등 경제상태, 건강상태, 사회
활동 등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치매 현황 및 실태에
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
사항

② 치매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치매환자 및 가족, 관계 기관

제6조(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	<u>· 법인·단체·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</u> 2. <u>치매환자의 진단·치료, 서비스 및 자원 이용 등 자료 조사</u> 3. <u>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면접조사</u> 4. <u>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</u>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·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제6조(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</u> 1. <u>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</u> 2. <u>그 밖에 중앙치매센터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---	---

⑤ (생 략)

제7조(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)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(이하 “치매연구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7조의4(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)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

1. (생 략)

2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,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

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) ① ----- 법 제16조제1항제4호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4(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) ① -----

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신경과 전문의, 신경외과 전문의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전문의-----

3. 「<u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지방의료원</u> ② (생략)	3. 「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준정부기관</u>, 「<u>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지방의료원</u>, 「<u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</u>」에 따른 <u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